
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

우리 구 아래 지상 토지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상 존재하지 않는 아래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말소 요청이 있어 현장확인한바, 해당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2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처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나 소유자의 거소지가 불명확하여 동법 제22조 제5항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5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- 처분제목 : 건축물대장 직권말소
- 직권말소 대상 건축물

대지위치	소유자	규모		용도	구조	말소사유	비고
		층수	면적(m ²)				
만리동1가 35-10	서○임	지상1층	15.64	영업	시멘트블럭조	부존재	

- 직권말소일 : 2024. 3. 4.
- 근거 :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2조
- 공고기간 : 2024. 3. 5.(화) ~ 2024. 3. 19.(화)
- 게시장소 :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, 인터넷 홈페이지 등
- 기타사항 :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
바라며,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(담당 이준형, ☎3396-580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의견제출서 1부. 끝.